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3 .

발 의 자 : 박형수 · 박수민 · 김종양
김석기 · 임이자 · 서지영
김장겸 · 이만희 · 김대식
송언석 · 김정재 · 김형동
이상휘 · 조정훈 · 조지연
강명구 · 정희용 · 구자근
임종득 · 최형두 · 이달희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‘기부 대 양여’ 방식(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)으로 진행되고 있으며, 현행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방식은,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는 반면, 토지 보상비·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하여야 하는 구조임.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보상·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

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

이에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,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,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·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아울러,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,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, 이주정착,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”을 “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수립·시행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전단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이”를 “및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”을 “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변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

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.

제20조제2항 중 “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”을 “된 때에는 해당”으로,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의 선 투자 및 보전)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의 보상비, 조사·설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 및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투자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전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과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의 정산에 반영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관련 사전절

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
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의 시행자
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7. (생 략) 8. “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”이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<u>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</u> 사업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----- <u>따</u> <u>른 지원계획에 따라 수립·시행되는</u> -----.
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) ① . ② (생 략)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,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<u>할 수 있다</u> . 이 경우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	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

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
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
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주택
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임
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8조(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
행자)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
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
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
하고,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
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
관이 시행한다.

②·③ (생 략)

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
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
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
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
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에
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
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
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
행자) ① -----

---및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
단체의 장이 공동으로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
사업의 시행자는 -----

협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0조(정부의 재정 지원) ① (생략)

②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 및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

-----.

제11조의2(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.

제20조(정부의 재정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--된 때에는 해당-----

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의 선 투자 및 보전)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의 보상비, 조사·설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 및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투자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전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

<u>산의 가액과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의 정산에 반영한다.</u>
--